

# 소 장

- 원 고 1. 박〇〇 (주민등록번호)
  - 2. 박●● (주민등록번호)
  - 3. 이 ● (주민등록번호)
  - 4. 박◎◎ (주민등록번호)

원고 1.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모 이 ● ●

원고들의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 박○○에게 금 26,723,065원, 원고 박◎◎, 원고 이◎◎에게 각금 2,000,000원, 원고 박◎◎에게 금 1,000,000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00. 8.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의 지위

원고 박○○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장해가 발생한 사람인바, 원고 박◎◎, 원고 이◎◎는 원고 박○○의 부모이고, 원고 박◎◎는 원고 박 ○○의 동생이며, 피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자동 차종합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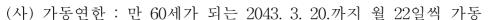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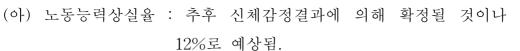
- 가. 소외 정◈◈는 2000. 8. 29. 22:20경 그의 소유인 이 사건 사고차량인 서울 ○○고○○○○호 레간자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 ○○동 ○○교차로 방면에서 ○○방면으로 가변차선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 중 ○○시 ○○구 ○○길 ○○ 앞 노상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원고 박○○를 충돌하여 그에게 우측대퇴골 경부골절,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혀 그 후유증으로고관절 운동제한으로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는 장해가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 나. 그렇다면 위 사고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정◈◈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위 가해 자동차는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상법 제726조의 2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박ㅇㅇ의 일실수입

- (1) 산정요소
  - (가) 성별 : 남자
  - (나) 생년월일 : 1983. 3. 21.생
  - (다) 사고당시 나이 : 만 17세 5개월 남짓
  - (라) 기대여명 : 55.54년
  - (마) 거주지: 도시지역
  - (바) 소득실태(도시일용노임) : 금 37.052원(2000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자) 호프만 수치 : 222.0780(=273.1245 - 51.0465)

273.1245{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3. 3. 20.까지 510개월간 해당분, (월미만은 버림. 다음부터 같음)}

**야시** 대한법률구조공단

51.0465(사고일부터 군복무 26개월을 마치는 2005. 5. 21.까지 57개월 간 해당분)

#### (2) 【계산】

[(37,052원×22일×0.12)×(273.1254-51.0465=222.0780)]=21,723,065원 (월 미만 및 워 미만은 버림)

나. 향후치료비

향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하겠습니다.

### 다. 위자료

원고 박○○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고, 노동력상실이 예상되는 장해를 입었으므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그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기재한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 위자료로서원고 박○○에게 금 5,000,000원, 부모인 원고 박◎◎, 원고 이◎◎에게 각금 2,000,000원, 동생인 원고 박◎◎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합니다.

###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에게 금 26,723,065원(향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확장 하겠음), 원고 박◎◎, 원고 이◎◎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박◎◎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0. 8.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1. 갑 제2호증

1.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1. 갑 제4호증

1. 갑 제5호증

1. 갑 제6호증의 1, 2

1. 갑 제7호증의 1. 2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원고 1. 박〇〇

2. 박●● (서명 또는 날인)

3. 이 ● ● (서명 또는 날인)

4. 박○○

원고 1,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서명 또는 날인)

모 이◉◉ (서명 또는 날인)

				· Corkife Co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www.klac.or.kr#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용	·인지액: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하는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호프만식 계산법에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어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무방함(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 16129 판결).			991. 3. 나 공제 240을 현가로 피해자 나 수치 하여야 산법에 14개월 는 얻을 단리연 현가율 현가율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 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함.

# 지연손해금

####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바, 의무이행을 실체법이 특정물의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지참채무의 원칙들을 택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됨.
- 3.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 원고의 주소지 또는 교통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각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2) 소멸시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상법 제724조 제2항), 최근 판례의 경향은 상법 제 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 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 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따라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된 경우에는 가해자측(가해운전자, 가해차량소유자 등)뿐만 아니라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 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